



<b>OX Training</b>	경단기	2017. 09. 15	이름 <input type="text"/>
	All Care+ 심화이론종합반 형사소송법 김중근T	권장 시간 10분 맞은 개수 <input type="text"/> /10	연락처 <input type="text"/>

다음 설명을 읽고 옳으면 O, 틀리면 X를 하세요.

1. 사물관할은 같이하나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고등법원이,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경우에는 대법원이 위 제1심 법원들의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으로서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이 된다. O/X
2.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판결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. O/X
3.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여야 한다. O/X
4. 피고인이 담당법관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고, 위증을 한 증인이 다른 법원 관할 내의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는 재판의 공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관할이전을 할 필요가 없다. O/X
5. 관련사건의 토지관할은 이른바 고유관할사건 및 그 관련 사건이 병합기소되거나 병합되어 심리될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므로, 고유관할사건 계속 중 고유관할 법원에 관련사건이 계속되었으나 양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다면 관련사건에 대한 고유관할 법원의 관할권은 소멸된다. O/X
6. 판례는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에 대하여 공범인 공동피고인도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증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소송절차가 분리되지 않더라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. O/X
7. 성명피모용자가 공판정에 출석하여 실체재판을 받거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한다. O/X
8. '형사재판절차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징계혐의사실을 인정하는 것'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. O/X
9. 구,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, 제111조 제3호는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교통사고의 객관적 내용만을 신고하도록 해석하고, 형사책임과 관련된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. O/X
10.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나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는다. O/X



<b>OX Training</b> <b>해설</b>	경단기	2017. 09. 15	이름 <input type="text"/>
	All Care+ 심화이론종합반 형사소송법 김종근T	권장 시간 10분 맞은 개수 <input type="text"/> /10	연락처 <input type="text"/>

1. [정답] O 형사소송법 제6조

2. [정답] X

단독판사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단독판사는 관할위반의 판결을 선고하지 않고 '결정'으로 관할권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.

3. [정답] X

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간려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. 즉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다.

4. [정답] O 대결 1982.12.17. 82초50

5. [정답] X

형사소송법 제5조에 정한 관련 사건의 관할은, 이른바 고유관할사건 및 그 관련 사건이 반드시 병합기소되거나 병합되어 심리될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, 고유관할사건 계속 중 고유관할 법원에 관련 사건이 계속된 이상 그 후 양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관련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여전히 유지된다. (대법원 2008.6.12. 2006도8568)

6. [정답] X

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,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.

7. [정답] O 대법원 1993.1.17. 92도2554

8. [정답] X

징계혐의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확정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형사재판 절차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징계혐의 사실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그와 같은 징계혐의 사실인정은 무죄추정에 관한 헌법 제26조 제4항 또는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규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. (대판 1986.6.10. 85누407)

9. [정답] O 헌재결 1990.8.27. 89헌가118

10. [정답] X

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 잡은 것이므로,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. (대판 2009.8.20. 2008도8213)

1. [정답] O

2. [정답] X

3. [정답] X

4. [정답] O

5. [정답] X

6. [정답] X

7. [정답] O

8. [정답] X

9. [정답] O

10. [정답] X